

산학협력중점교원인사규정

제정 2011.10.01

1차 개정 2012.02.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우송정보대학(이하 “본 대학” 이라 한다.)의 산학협력중점교원(이하 “산학교원” 이라 한다.)의 자격, 임용,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정의) ①산학교원은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, 연구, 창업·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,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 받는 교원을 말한다. 단, 지정형 전임교원은 산업체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

②산학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나뉘며, 전임교원의 직급은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적용) 산학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특별히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4조(자격) ①신규임용 산학교원은 민간 산업체, 국가기관,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.

②산업체 경력 인정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은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의 산업체 경력관련 조항을 준용한다.

제5조(임용) ①신규임용 산학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우송학원 이사장이 임용한다.

②이 규정 시행 이전 임용된 전임교원 중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산학교원으로 지정 할 수 있다.

③산학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제반사항은 교원인사규정에 의한다.

제6조(임무) ①산학교원은 산학협력 정책제안, 산학협력 관련 외부사업의 기획 및 운영, 산업기술 정보제공,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지도, 학생 현장실습 지도, 산학협력 교육 등의 산학협력 사업 활동 전반에 전념하여야 한다.

②산학교원의 책임시수는 교원의 책임시수에 30% 이상을 감면받아 학과(부)에 소속 되어 학생을 지도 교육한다.

제7조(평가) ①산학교원의 평가는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.

②산학교원은 제6조의 임무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, 평가결과는 교원의 승진, 재임용, 연봉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8조(면직) ①전임 산학교원은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.

②비전임 산학교원은 계약제초빙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.

제9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의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 제한 없이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인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